

행정자치부 훈계요구

제 목 수거검사 부적합 축산물 행정처분 부적정

기 관 명 경상남도

관 계 기 관 김해시

관 련 자 ① 김해시 ○○○면사무소(전 ○○○○센터 ○○○과) 지방○○○○
○○○

② 김해시 ○○○○과(전 ○○○○센터 ○○○과) 지방○○○○
○○○

③ 김해시 ○○○○센터 ○○○과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

내 용

지방○○○○ ○○○은 2011. 3. 28.부터 2016. 1. 14.까지 김해시 ○○○○
센터 ○○○과에 근무하면서 축산물위생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, 지방○○○○
○○○은 2014. 11. 10.부터 2015. 6. 5.까지 김해시 ○○○○센터 ○○○과에 근무하면서 축산물위생관리 업무를 책임 담당하였고,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은 2013. 2. 26.부터 2016. 7. 12.까지 김해시 ○○○○센터 ○○○과에서 축산물위생관리 업무를 총괄 담당하였다.

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, 2015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(축산물위생) V. 축산물 수거검사에 따르면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축산물가공업소 등에서 생산·유통되는 축산물에 대해 주기적(기획)으로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

또한 수거검사 결과 성분규격 위반 등 부적합 축산물로 판명되어 검사기관 등으로부터 통보 될 경우, 관할관청은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 제36조(압류·폐기 또는 회수)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 2(회수대상 축산물의 기준) [별표14의3] 및 제54조의2(축산물의 회수명령²²³) 등에 따라 해당 부적합 축산물에 대해 회수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,

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[별표11]에 따라 ‘품목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’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

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[별표11] 1.일반기준.너목.(3)에 따르면 축산물을 처리·가공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목제조 정지 처분기간의 1/2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.

한편 경상남도○○○○연구소에서는 ○○○○연구소중부지소가 축산물가공업소인 ○○○○업(주)○○공장(경남 ○○시 소재)에서 수거하여 검사 의뢰한(2015. 3. 3.) ‘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(축산물 유형 : 분쇄가공육제품)’의 성분규격 검사결과, 부적합(아질산이온 기준 초과)으로 판정된 사항을 경상남도 ○○과에 보고(○○○○○과-0000호, 2015. 0. 00.) 하였고

보고를 받은 경상남도 ○○과는 해당 축산물을 제조한 축산물가공업소의 관할관청인 김해시 ○○○과에 부적합 사실을 알리고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(○○과-0000호, 2015. 0. 00.)하였다.

따라서 김해시 ○○○과는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통보된 동 사항에 대해 회수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, 성분규격을 위반한 관내 축산물가공업소인 ‘○○○○(주)○○공장’에 대해서는 ‘품목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’의 행정처분을 하거나,

223) 수거검사, 위생점검 등을 통해 회수의 필요성을 인정한 정부(관청)가 법 제36조(압류·폐기 또는 회수)에 따라 회수를 실시할 것을 강제 명령하여 이루어지는 회수를 말함

해당 부적합 축산물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동 품목제조 정지 처분기간의 1/2이하의 범위인 ‘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’로 경감하여 행정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.

그런데도 김해시 ○○○○센터 ○○○과 지방○○○○ ○○○은 아래 [표]와 같이, 성분규격을 위반한 해당 부적합 축산물에 대해 회수, 폐기 등의 조치만 하고, 성분규격을 위반한 동 업소에 대해서는 「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제41조 [별표11]의 행정처분이나 경감기준 적용이 아닌, 해당 부적합 축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100% 회수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「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」 제26조의 2의 감면기준으로 달리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면제²²⁴⁾하는 등 행정처분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.

또한 동 업무 실무 책임자인 지방○○○○ ○○○과, 총괄 책임자인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은 소속직원 ○○○의 위 부적정 업무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, ○○○이 상신한 해당 업소의 조치계획 보고 문서를 철저히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결재를 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하였다.

【 표, 수거검사 부적합 축산물 행정조치 내역 】

업종	업체명 (소재지)	제품명 (축산물 유형)	부적합 사유	행정조치 결과	비고
축산물 가공업	○○○○(주) ○○공장 (경남 ○○시 ○○로 00)	○○○○○○ ○○○○ (분쇄가공육제품)	아질산이온(g/kg) 검출 : 0.10 (기준 : 0.07이하)	행정처분 면제 (사유 : 회수 등 성실히 이행)	생산량 : 1,160kg 회수량 : 1,154kg(창고보 관, 미유통) 회수율 : 100%

조치할 사항 김해시장은

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.

²²⁴⁾ 조치계획 보고(○○○과-0000호, 2015. 0. 00.)